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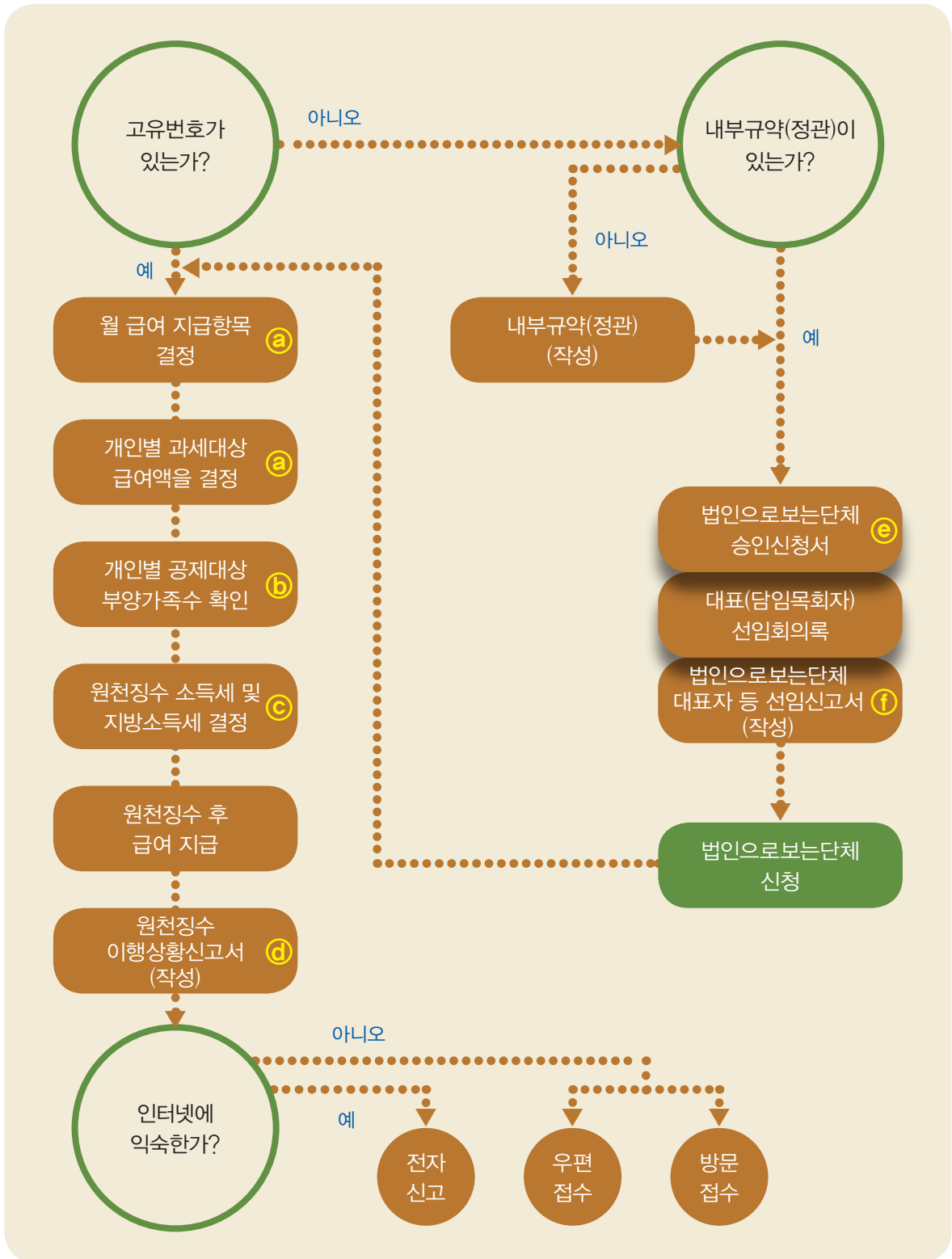
본 자료는 소득세를 신고 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한
간편 가이드 자료이며,
더 자세한 내역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net.kr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흐름도



지급 항목별 분류 및 공제 금액 계산

소득세신고의 첫 단계는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항목을 분류하고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별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1.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 확인 a

급여지급액에서 다음의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월 10만원 이내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본인명의 차량을 사용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

2. 공제대상 부양가족 인원수 확정 b

본인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해당합니다.

단,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계산시 (자녀수 - 1)을 추가합니다. (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배우자
- 20세 이하 자녀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3. 공제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 확정 c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조건표에서 과세대상 월급여 금액과 부양가족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 (10원미만 절사)

사례 _ 2012년 6월 급여분, 2012년 6월 30일 지급

- 급여내역 : 육아수당 10만원, 식대보조 10만원, 체력단련비 8만원을 포함한 194만원
- 가족(4인) : 본인, 배우자(근로소득 있는 학교 교사), 12세 아들, 3세 딸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및학자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700	1,710	14,860	11,490	3,810	0	0	0	0	0	0	0	0
1,710	1,720	15,080	11,700	4,020	0	0	0	0	0	0	0	0
1,720	1,730	15,290	11,910	4,220	0	0	0	0	0	0	0	0
1,730	1,740	15,500	12,120	4,430	1,050	0	0	0	0	0	0	0
1,740	1,750	15,710	12,330	4,630	1,250	0	0	0	0	0	0	0
1,750	1,760	15,920	12,540	4,830	1,460	0	0	0	0	0	0	0
1,760	1,770	16,130	12,750	5,040	1,660	0	0	0	0	0	0	0
1,770	1,780	16,340	12,960	5,240	1,870	0	0	0	0	0	0	0

● 월급여액 : 194만원-10만원(육아수당)-10만원(식대보조)=174만원

●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 본인(1)+자녀 2인(2)+2인 이상 다자녀(1)=4인

월급여액 174만원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 4인이 만나는 지점 1,050원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이며 소득세의 10%인 100원이 원천징수할 지방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㉔

양식은 국세청(<http://www.nts.go.kr>) 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http://www.cfnet.kr>) 웹사이트에서 파일(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을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2012.2.28. 개정) (1 쪽)

➔①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12년 6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12년 6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교회)			대표자(성명)	(담임목회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발급받은 고유번호)			사업장 소재지	(교회 주소)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여, (부)
									전화번호	(교회전화)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사	간이세액	A01	1	1,840,000	1,05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합계	A10	1	1,840,000	1,050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 ① 신고구분 : 6개월 단위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월’을 선택
- ② 귀속연월 : 소득 발생연월을 기록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 개시월(상반기는 1월)을 기록
- ③ 지급연월 : 지급한 연월을 기록하며 반기 납부의 경우 반기의 종료월(상반기는 6월)을 기록
- ⑤ 총지급액 : 근로소득의 간이세액란에 기입하되,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록하며 월 10만원 이하 식대는 제외

총합계	A99	1	1,840,000	1,05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⑭+⑮+ ⑯)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⑳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 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 간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 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O”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송계명세(10 쪽)	
2012년 7월 10일							세무대리인			
신고인 (*** 교회 000) (서명 또는 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등록신청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신청서’와 ‘대표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합니다.

- 정관 또는 규약
- 담임목회자 선임을 결의한 공동의회/제직회 의사록 사본
- 임대차 계약서(또는 전대계약서 : 전대 계약시 건물 주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작성사례 e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3.31> (알 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단체의 명칭	*** 교회	② 결성연월일 (창립일)
③ 주사무소소재지	(주소)	④ (전 화 번호)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 성명 (담임목회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담임 목회자 주민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담임목회자 주소)	⑧ (전 화 번호) (*** - ****)
사 업	⑨ 고유사업	종교(기독교)의 보급 및 전파
	⑩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⑪ 소재지(발행처)	⑫ 가 액
⑬ 부동산	*****	*****
⑭ 유가증권기타	*****	*****
합 계		*****
국제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00월 00일 신청인 (***교회 담임목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없 음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 선임신고서 작성사례 f

[별지 제6호의 4 서식] (2001.3.3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 단체	①명 칭 (*** 교회)	②고 유 번 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82 - *****
	③소 재 지 (교회 주소)	
신 고 내 용		
④선 임(변 경)연 월 일 (담임목회자 선임결의 공동의회/제직회 일시)		
⑤신 고 사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초선임 <input type="checkbox"/> 변경		
최초 선임	⑥성 명 (담임목회자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담임목회자 주민번호)
	⑧생 년 월 일 ****-**-**	⑨주소또는거소 (담임목회자 주소)
변경후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또는거소	⑬생 년 월 일
국제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00월 00일		
신 고 인 (**교회 *****) (서명 또는 인)		

Q & A

고유번호증 고유등록번호의 가운데 두자리수가 89이다. 문제 없는지?

가운데 번호가 89이면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소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단,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하므로 급여 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2012년 간이세액표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 급여 174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지?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법규 성격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며,
다음해 2월 1년간 소득을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급여 지급항목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

교회에 소속되어 근로한 대가로 받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관할세무서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절차를 일정별로 요약하면?

매월 급여 지급일 :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 연말정산

다음해 2월말 : 급여지급관련 지급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 제출

외부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강사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하는가?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교역자인데 소속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가?

소속교회의 등록된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음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눔과섬,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에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전화 _ 02.741.2793

팩스 _ 02.741.2794

홈페이지 _ www.cfnet.kr

이메일 _ protest@protest2002.org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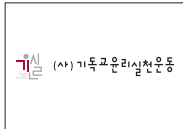
주소 _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전화 _ 02.741.2793

팩스 _ 02.741.2794

홈페이지 _ www.protest2002.org

이메일 _ 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_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_ 02.794.6200

팩스 _ 02.790.8585

홈페이지 _ www.cemk.org

이메일 _ cemk@hanmail.net



나눔과섬

주소 _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7번지 에프오빌딩 502호

전화 _ 02.565.5886

팩스 _ 0505.567.0691

홈페이지 _ www.nanumsem.kr

이메일 _ ngo114@gmail.com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 _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 _ 02.777.1333

팩스 _ 02.319.1103

홈페이지 _ www.goodchurch.re.kr

이메일 _ 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주소 _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 _ 02.924.0240

팩스 _ 02.924.0243

홈페이지 _ 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 _ thebrightfd@gmail.com